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추가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며
-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안 제12조)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5조의2)
-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명칭 변경(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경상북도 세정과-11259(2009.12.02)호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
(행정안전부)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u> 이 ----- ----- ----- ----- ----- ----- ----- -----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용 부동산 도시계획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u>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2. ~ 3. (생략) ② <u>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u>	----- ----- ----- 1. <u>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	----- ----- ----- ----- --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 ----- ----- ----- ----- ----- ----- ----- -----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세를 면제한다.</u> 2. ~ 3. (생략) < 신 설 >	<u>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u> <u>「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u>	○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차량의 자동차세 특례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단서 생략)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 (현행과 같음)	○ 사업소세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 -----	○ 사업소세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u>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 사업소세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

관 련 법 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16조 및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2.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